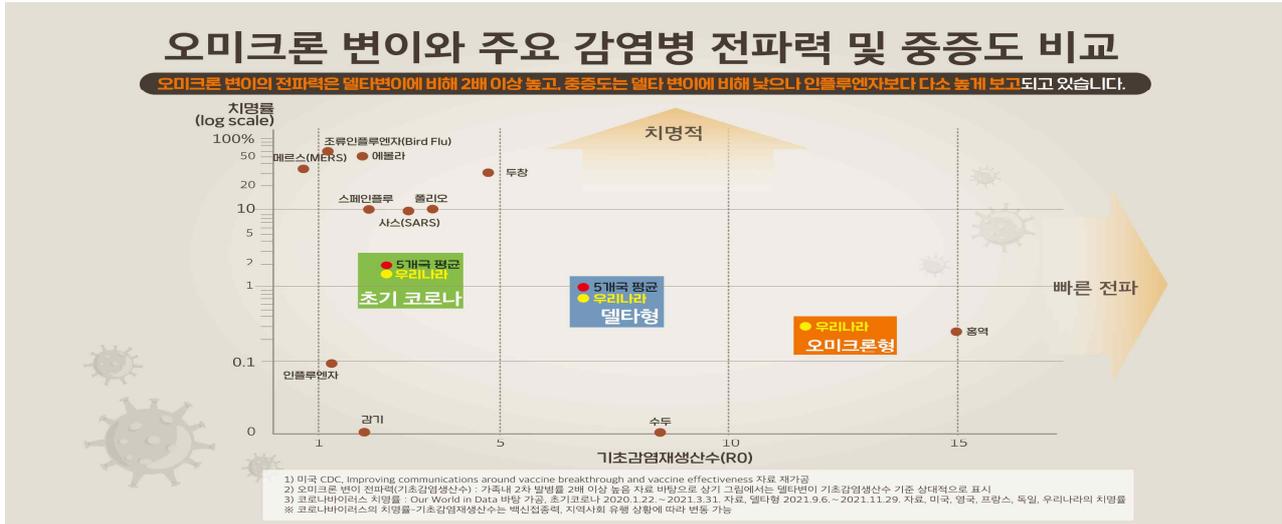


## ① 전파력

-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비해 2배 이상 높고, 중증도는 델타 변이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- 접촉력이 있거나 무증상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자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.



## ② 잠복기 및 전염기

-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: 2~4일
- 코로나19 바이러스(SARS-CoV-2) 전염기: 증상발현 2~3일부터 8일
- \* 감염력은 증상발현 1일전부터 최고조, 증상발현 1주일 이내 소실

## ③ 증상

-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면 이전 변이와 유사한 증상(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 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, 폐렴 등)이 나타날 수 있고, 증상의 유무와 중증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상태, 기저질환, 연령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립중앙의료원에서 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, 유증상자 72%, 무증상자 28%로 나타났고, 기침(52%), 인후통(43%), 발열(33%), 두통(13%), 가래(15%) 순을 보였습니다.

#### ④ 중증화율 및 치명률

- 오미크론 변이의 연령표준화 중증화율은 0.37~0.42%, 치명률은 0.19~0.21%로 델타 변이(연령표준화 중증화율 1.84%, 치명률 0.58%)에 비해 약 1/4~1/3배 낮게 분석(2022.2.19.기준)되었습니다.

#### ⑤ 치료

- 대부분 경증은 해열제, 진통제 등으로 대증치료를 하며,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하고 필요시 (비)대면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
- 중증으로 이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 (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)를 사용하게 됩니다.

## ① 투약가능 대상자

○ 먹는치료제 ‘팍스로비드’는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가 아래 기준1과 기준2를 충족하면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게 처방·투약이 가능합니다.

• (기준1) 만 60세 이상,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<sup>1)</sup>, 만12세 이상 면역저하자<sup>2)</sup>에 해당되는 환자가 투약대상자 대상입니다.

1) ▲당뇨, ▲심혈관질환, ▲만성 신장질환, ▲만성 폐질환, ▲체질량지수(BMI) 30kg/m<sup>2</sup> 이상, ▲신경발달장애

2) ▲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, ▲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, ▲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, ▲검상구변혈 또는 헤모글로빈증,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, ▲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, ▲폐이식 환자 등

• (기준2) 코로나19 증상발생 후 5일 이내(무증상자 제외)에 해당하며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대상입니다.

※ ('22. 3. 14.부터 한시적 허용)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는 만 60세 이상의 환자에 한해 기준 2 부합시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 합니다.

\*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

※ 위 기준1과 기준2를 충족하는 투약대상자 중 <sup>①</sup>발열·숨참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<sup>②</sup>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 환자는 우선적으로 투여를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.

- 다만, 상기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신장·간 질환 여부<sup>1)</sup> 및 복용 중인 의약품·건강보조식품<sup>2)</sup> 등에 따라 처방·투약이 제한\*될 수 있습니다.

1) ▲사구체여과율(eGFR) 확인을 통해 신장질환 중등도에 해당되면 이 약을 금방하여 처방 중증의 경우 투약을 권장하지 않음, ▲중증 간장애(Child-Pugh C 등급) 환자의 경우 투약을 권장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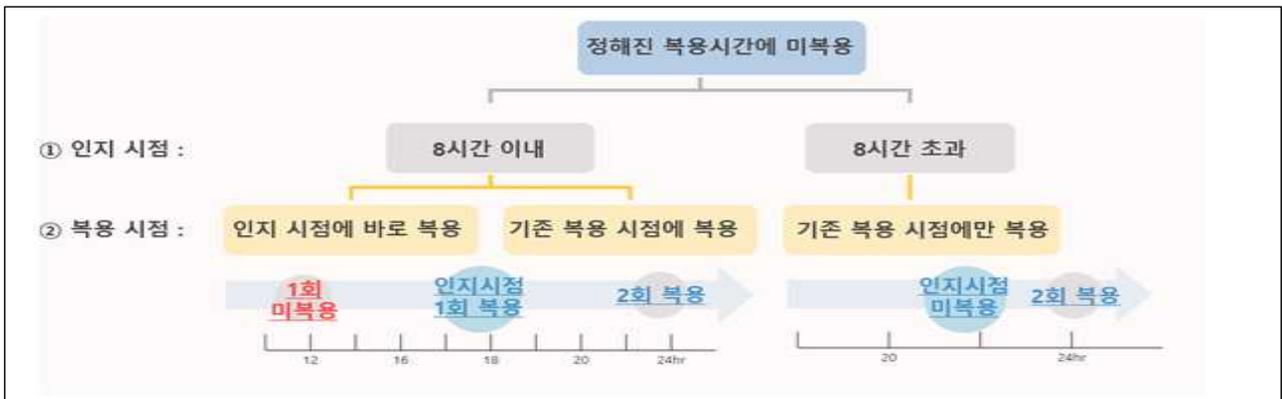
2)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, 비타민, 그리고 생약보조제를 포함하여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 중 투여제한 및 금기 약물의 포함 여부 확인

## 2 복용방법

- 매일 아침·저녁(1일 2회, 12시간 간격)으로 식사와 관계없이 5일간 총 10회분 복용 중단 없이 정해진 용법·용량에 맞게 복용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- 이 약을 처방받으셨으면, 특별한 사유 없이 복용을 미루지 말아주세요.
  -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해야 하므로 환자가 복용하기 편한 시간으로 정해서 첫 회차 복용을 시작합니다.
  -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, 통째로 삼키세요.
  - 다른 확진자와 절대로 약을 나눠 복용하지 마세요.
  - 증상이 완화되더라도, 전문가와 상의 없이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.
- 약 복용을 잊은 경우, 한꺼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마세요.



- 복용을 잊은지 8시간 이내인 경우, 바로 복용하고 다음 회차 용량을 원래 정해놓은 시간에 복용하세요.
  - 복용을 잊은지 8시간을 초과한 경우,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원래 정해놓은 시간에 복용하세요.
- 이 약을 복용 중 쓴맛(미각변화), 식욕부진, 설사, 근육통, 고혈압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습니다.
  - \*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약품안전관리원(<http://www.karp.drugsafe.or.kr>, ☎ 1644-6223)으로 연락하실 수 있음

### ③ 치료제 수령

- 동거인은 약국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\* 환자와의 유선 통화, 신분증 등을 통한 수령인 정보 확인
  - 동거인 방문수령이 불가능한 경우, 지자체 및 약국과 상의 합니다.

## ① 자가격리 방법

- (격리방법)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.
  -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    - \* 격리수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/ 생활지원비 등 미지원
  -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며,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,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합니다.
- (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) 출근·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.
- (공동격리) 격리자가 중증장애인, 영유아·아동(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)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습니다. 공동격리를 원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고 별도의 격리통지서(또는 격리통지문자)를 받아야 합니다.
- (격리장소 외부인 방문)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합니다.
  - 다만, 난방·가스·수도 등 설비의 긴급수리, 위급상황 또는 일정 변경이 어려운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을 허용합니다.
  - 출입자는 방역수칙\*을 준수하여 최단시간 내 방문목적 달성 후 귀가합니다.
    - \* 적정 거리두기(방문 중 별도공간 대기 등), 마스크 착용(KF94 이상), 집안 환기·소독 등

## ② 폐기물 처리방법

- 재택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재택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.
-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,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(이중 밀봉),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 소독 후 배출합니다.
- 음식물쓰레기,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,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(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·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)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.
-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.

## ① 확진자

- 아래의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합니다.
  - (기간)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, 코로나19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
  - (증상) 격리 기간동안 무증상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동안 해열치료없이 발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

### ▶ (예시) 진단 시 무증상자

11.1.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.7. 24:00 격리해제 가능

### ▶ (예시) 진단 시 유증상자

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: 11.1. 12시 증상 발생 → 11.2. 검체채취 → 11.4.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→ 11.8. 24:00 격리해제 가능

- 다만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가 필요합니다.
  - 출근 및 등교 등의 외출은 가능하나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시고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

### ▶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(예)

- (시설)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(식사, 음주, 음료, 목욕 등) 실내,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, ③ 거리두기(2m) 유지가 어려운 실내, ④ 미접종 연령군(17세 이하) 다빈도 이용시설
- (활동)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(운동, 노래, 합성 등), ② 장시간 실내 체류

### ▶ 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

-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·입소자에 대한 면회, 노인·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
  - 의료기관, 요양병원·시설, 중증장애인·치매시설, 경로당·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(경로당, 노인복지관, 치매보호시설,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)

## ② 동거인

- 최초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동안 수동감시를 시행합니다.
- 다만, **최초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** 다음과 같은 사항을 **최대한 준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(검사) ① 최초 확진자 검체채취일 기준 **3일 이내에 PCR 검사** 시행, ② 재택치료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**6~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시행**,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, ③ 수동감시 기간 중 **의심증상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**합니다.
  - (활동) 가급적 외출을 최소화하여 주시고, 외출시에는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,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을 자제합니다.

### ▶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(예)

- (시설)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(식사, 음주, 음료, 목욕 등) 실내,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, ③ 거리두기(2m) 유지가 어려운 실내, ④ 미접종 연령군(17세 이하) 다빈도 이용시설
- (활동)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(운동, 노래, 합성 등), ② 장시간 실내 체류

### ▶ 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

-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·입소자에 대한 면회, 노인·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
  - 의료기관, 요양병원·시설, 중증장애인·치매시설, 경로당·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(경로당, 노인복지관, 치매보호시설,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)

## ③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격리 관련

- 최초 확진자의 격리기간 중 동거인에서 확진자 추가 발생 시, 추가 확진자는 본인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\* 격리합니다. 단, 최초 확진자 및 그 외 동거인의 격리기간 및 수동감시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.

\* 7일 차 자정(24시)(8일 차 0시) 해제

- ▶ (예시) 1.1. 최초 확진자 검체채취 → 1.4. 동거인 증상 발생하여 검체채취 → 1.5.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→ 1.7. 24:00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 가능 → 1.10. 24:00 추가 확진자 격리해제 가능

\* 그 밖의 동거인은 최초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후 해제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,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입원·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, 그 밖의 입원·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중복지원 불가)

\*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

## ① 유급휴가비

□ (지원대상) 코로나19로 입원·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◆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!

-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·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, 대기업·중견기업 종사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.

□ (신청방법)

- (신청자)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(지원금액)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.(단, 1일 최대 45,000원, 5일분까지만 지원)
- (신청기관)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세요.
- (신청기간)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  
\* 단,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- (신청서류)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,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,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사업장 통장사본, 중소기업(소기업, 소상공인 포함)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□ (안내·문의처)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(1339)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바랍니다.

## ② 생활지원비

□ (지원대상) 코로나19로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◆ **입원·격리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!**

-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·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.

### □ (신청방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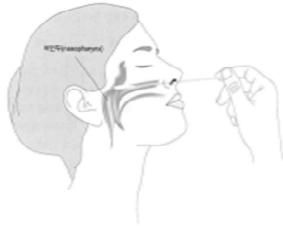
- (신청자)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(지원금액)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,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합니다.
- (신청기관) 주민등록주소지(외국인등록주소지)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.
- (신청기간)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(신청서류) 생활지원비 신청서,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, 신분증,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□ (안내·문의처)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(1339)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.

## ① 검사종류 별 검사방법

□ (PCR검사)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검사법으로, PCR검사 결과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진합니다.

- (원리) 검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하여 검출하기 때문에, 검체에 바이러스가 아주 조금만 포함되어있어도 검출 할 수 있어 가장 정확합니다.
- (검체) 코 안쪽 깊숙이까지 면봉을 넣어 채취하는 비인두도말 검체를 사용하기 때문에, 의료인 등 전문가가 채취해야 합니다.



- (검사방법) 우선순위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, 보건소 선별진료소·임시선별검사소 및 검사시행 병·의원에서 증빙자료를 제시하시면 PCR검사(검체채취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우선순위 검사 대상		증빙자료 예시
만 60세 이상 고령자	만 60세 이상 고령자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(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)
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	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	의사의 소견서,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
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	밀접접촉자(확진자와 접촉한 자)	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(밀접접촉자 통보 문자), PCR검사 대상 학교장·원장 확인서
	격리 해제 전 검사자(수동감시자 포함)	격리통지서,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, 격리통보 문자
	해외입국자(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)	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, 격리통지서,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	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* 종사자	재직증명서, 사원증 등
	외국인보호시설·소년보호기관·교정시설 입소자	보호명령서, 입원(소년원, 소년분류심사원) 통지서 또는 안내문(통보 문자)
	휴가 복귀 장병	휴가증
	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(또는 간병인) 1인	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, 문자 등
신속항원·응급선별 검사 양성자	신속항원검사(전문기용, 개인용) 양성자,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	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, 양성 확인된 제품(밀봉하여 제출) 등

\* 요양병원, 요양시설, 정신병원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양로시설, 노인복지시설, 한방병원, 재활병원(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)

- (검사비용) 보건소 선별진료소·임시선별검사소는 무료이며, 병·의원에서는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일부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- (검사과정) 선별진료소·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**검체채취** → 검사전문의료기관 등에서 **유전자 존재 여부 확인(PCR)** → 검체를 채취한 보건소 또는 병·의원으로 **결과 회신**  
→ 개인에게 **결과 통보**

### 〈PCR검사(검체채취) 후 행동요령〉

- **검사 후에는 나와 이웃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행동해주세요.**
  - 검사 직후 다른 장소를 들르지 말고 **자택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.**
  - 귀가 시는 **마스크를 착용**하고 **자차, 방역택시**를 이용하여 주시고, 대중교통 이용은 **자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**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하지 마시고**, 타인과의 **접촉**을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자택 내에서도 **가족 간 감염 예방**을 위해 **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**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*검사 다음 날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가 안내됩니다.**
  - **코로나19 검사 결과(문자로 발송 등)**를 다음 날 받지 못하신 분은 **관할 보건소로 전화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**PCR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(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)**
  - 관할 보건소에서 절차에 따라 **정확한 격리기간과 재택치료 방법,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 및 치료방식**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  - 재택치료 대상자는 **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**으로 나뉘어 건강관리를 받게 되며,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시 **자세한 행동 요령**을 빠른 시일 내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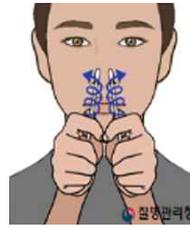
※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(<https://www.kdca.go.kr/>)에 게시된 '**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**'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(신속항원검사) 30분 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검사방법이 간편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, 전문가용과 개인용 두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.

- (원리) 검체 내 존재하는 **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구성성분(항원)**이 검사키트의 항체에 결합하면 색이 나타나, 눈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.
- (검체) 전문가용은 코 안쪽 깊숙이까지 면봉을 넣어 채취하는 **비인두도말 검체**를 사용하고, 개인용은 코 앞쪽에 1~2cm만 면봉을 넣어 채취하는 **비강도말 검체**를 사용합니다.



[전문가용]



[개인용]

- (검사방법) 검사가 필요한 누구나 보건소 선별진료소·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를 받으실수 있으며, 가까운 약국 등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매하여 검사하는 것도 가능하며,
  - 검사시행 병·의원을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(검사비용) 보건소 선별진료소·임시선별검사소는 무료이며, 약국 등에서 구매하실 때는 구매비용을 지불하셔야합니다.
  - 병·의원에서 검사 받을 때는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일부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(검사과정) 정확한 검사를 위해, 모든 검사과정은 검사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사용 설명서의 검사과정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.

- (개인용)

- ① 키트에 포함된 면봉을 양쪽 콧구멍에 각각 5~10회씩 문질러 검체를 채취합니다.
  - \* 면봉의 솜 부분이 다른 곳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
- ② 면봉을 추출액에 10회 이상 휘저은 후, 튜브 양 옆을 눌러 짜주며 면봉을 꺼냅니다.
- ③ 검사 키트 검체 점적부분에 추출액을 3~4방울 떨어뜨립니다.
- ④ 제품별로 지정된 시간(약 15~20분)까지 기다린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.



- (전문가용) 의료인이 수검자의 코 깊숙히 면봉을 집어넣어 비인두도말 검체를 채취하고, 이후 과정은 개인용 검사키트와 동일하게 검사합니다.

## <신속항원검사 결과별 행동요령>

- **자택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면, 보건소 선별진료소·임시선별검사소에 꼭 방문하세요.**
  - **두 줄로 확인된 키트를 투명한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지참하고,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을 준비하여, 신속하게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\*합니다.**
  - \*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위치 및 운영시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누리집(ncov.mohw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**병·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면, 방문하신 병·의원에서 PCR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.**
  - PCR검사를 하지 않는 병·의원인 경우, 소견서 등 신속항원검사 양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발급받아 **보건소 선별진료소·임시선별검사소에 꼭 방문하세요.**
- **신속항원검사키트 결과 음성이더라도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.**
  -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나 임상증상이 있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, 주기적으로 반복검사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② 가정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검사방법

- (확진자)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된 이후, 격리 해제 등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.
- (동거인) 최초 확진자의 검체채취일 기준 ①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, 최초 확진자의 격리 시작 ②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합니다.
  - 자가검사 결과가 양성이면, 해당 키트를 밀봉·지참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·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가정 내 확진자 발생 7일 이내(수동 감시 기간)에 의심증상이 나타나면, 우선적으로 병·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찰·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- 병·의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, 개인이 구매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할 수 있으며,
-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**두 줄로 확인된 키트를 투명한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지참하고,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을 준비하여, 신속하게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\*합니다.**

# 전화상담·처방이 필요할 때!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용안내

## ☑ 이용안내

코로나19 증상이 **경증**이거나 **단순 의료상담**이 필요한 경우  
동네 병·의원 등을 통해 **전화 상담·처방**을 받습니다.



## ☑ 이용기관

동네 병·의원, 호흡기전담클리닉,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,  
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**전화 상담·처방**이 가능합니다.

- **참여 의료기관**은 네이버 지도, 다음 지도, 카카오 맵에서 「코로나19 전화상담병의원」으로 검색 가능하며, 건강보험 심사평가원(www.hira.or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**야간에 의료상담**이 필요할시 지자체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**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**를 통해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\*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목록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(www.hira.or.kr)에서 확인 가능

## ☑ 의약품

**모든 동네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·전달**이 가능합니다.

\* 먹는 치료제(팍스로비드)는 담당약국에서만 조제·전달이 가능하며, 담당약국 명단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(www.hira.or.kr)에서 확인 가능

- 동거가족, 공동격리자, 지인 등 **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하여 수령**하고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\* 격리수칙에 따라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하며, 대리인이 수령시 KF94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
- \* 단, 독거노인,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'먹는 치료제 담당약국'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

## ☑ 본인부담금

**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나,**

- 환자의 **기저질환**(예: 고혈압 등)이나 **코로나19 질환과 관련 없는 경우**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
☎ 의료적 상담 이외, 생활안내, 의료이용 방법, 격리기간·해제,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 
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**「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」**에 문의하세요.

## 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!

-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(예: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)에 따릅니다.
- 재택치료(자가격리)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**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**할 수 있습니다.
-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,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.

## 우리동네 코로나19 재택치료!

# 의료상담센터·행정안내센터 이용안내

### ✓ 의료상담센터

- 일반관리군의 의료상담에 대응하기 위해 시·군·구 또는 시·도별로 설치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.
- 의료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### ✓ 행정안내센터

- 의료적 상담 이외에 생활안내, 의료이용 방법, 격리기간·해제,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행정안내센터 연락처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### 📢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!

-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(예: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)에 따릅니다.
- 재택치료(자가격리)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.
-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,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.

#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!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안내

## ✓ 집중관리군

- 생활치료센터·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총 2회(재택치료 시작일, 시작일+5일) 실시합니다.

### 생활치료센터·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 설치안내

#### ▶ 설치 방법

구글 플레이스토어·앱스토어에서  
“생활치료센터” 검색 및  
“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” 앱 설치

#### ▶ 설치 후, “재택치료” 선택 > 인적사항 등 입력



- 필요시 재택치료팀에 심리상담 연계를 요청하거나, 직접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(1577-0199, 24시간 운영)로 전화하여 심리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

## ✓ 일반관리군

-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(1577-0199, 24시간 운영)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



ⓘ 의료적 상담 이외, 생활안내, 의료이용 방법, 격리기간·해제,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**‘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’**에 문의하세요.

### 📢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!

-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(예: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)에 따릅니다.
- 재택치료(자가격리)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.
-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,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.